

#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개정 이유

-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라 그 필요성 및 기능이 감소된 안산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.

## □ 주요 내용

-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라 그 필요성 및 기능이 감소된 안산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5조).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3항
-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 및 제9조 제5항 및 제6항
-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 
제17조 내지 제21조

## □ 관계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사전예고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8. 6. 13. ~ 7. 2. (20일간)

**기타참고사항 : 별첨**

-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(2008. 5. 20.)
- 「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전문

#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폐지등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산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주민생활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주민생활지원과장 최 억 용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주민생활지원담당 김 종 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종 수 (행정 2862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(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</u>  <u>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</u>  <u>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</u>  <u>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제&gt;</u></p>